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2호

2025년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년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 직급	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 업무	근무예정 부서
행정 지원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1명	2년 (주 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외빈 접견 지원 및 회의실 행사 지원 등 ▶ 도정 업무 일반행정 지원 ▶ 대내·외 부서행사 지원 및 디지털매체 홍보 등 	총무과
노사 업무	지방행정 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노동 관련 정부 정책 파악 및 반영 ▶ 노사·노동 관련 동향관리 및 대응 ▶ 각종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 노사·노동 관련 법령 해석 등 	일자리 민생 경제과

※ 임용(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조의5,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507호)
- 마.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외”이라 한다)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직급)	임용자격 기준
<p>행정지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상당] 1명</p> <p>- 총무과 -</p>	<p>▶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p> <p>-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행정[디지털 매체(SNS, 블로그 등) 운영 및 관리 포함] 직무 관련 경력자</p>
<p>노사업무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p> <p>- 일자리민생 경제과 -</p>	<p>▶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p>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노사관련 분야 근무경력</p>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보수수준

가.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6급	83,677천원	55,756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68,388천원	48,572천원	주35시간(하한액적용) 42,500천원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직접방문 및 정보공개청구)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5. 3. 5.(수) ~ '25. 3. 7.(금), 18:00까지 /3일간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 ↳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공무원채용팀으로 연락바람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4219)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X)

나. 1차시험(서류전형) : '25. 3. 1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시험 공고문(일정 안내 등) : '25. 3. 13.(목) / 도 홈페이지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5. 3. 18.(화) ~ 3. 19.(수)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5. 3. 25.(화) / 도 홈페이지(시험채용)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도 홈페이지 시험채용에 공고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2호)

- 응시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7천원(6·7급)
 -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09:00~16:00)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 우편접수시 통상환증서 미포함 할 경우 접수 불가(응시원서 접수기간내 제출시 인정)

다. 이력서 1부(별지서식 3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도서식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사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바.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업무분장 내부 결재 및 분장표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사.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①, ② 모두 제출)

- 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②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해당연도 모두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자. 주민등록초본 1부(남여 모두 제출 : 병적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차.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타.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8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마.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바.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 아.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북소식 (시험채용-임기제/개방형직위 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자.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차순위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063-280-4219)
 - 업무관련 문의

임용분야	직 급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일반행정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총 무 과	☎063-280-2247	
노사업무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일자리민생 경제과	☎063-280-4722	

참고 1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행정지원 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상당)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총무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외빈 접견 지원 및 회의실 행사 지원 등 ○ 도정 업무 일반행정 지원 ○ 대내·외 부서 행사 지원 및 디지털매체 홍보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추진력, 관계구축력 ○ (직렬별 역량) 갈등 조정능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센터 서비스 및 대민소통 기술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능력 등 필요 ○ 행정절차와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 및 협상, 협력기술에 대한 능력 필요 ○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홍보에 관한 기본 능력 필요
------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일반행정[디지털매체(SNS, 블로그 등) 운영 및 관리 포함] 직무 관련 경력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매체(SNS, 블로그 등) 운영 및 관리 실무경력

참고 2 직무기술서

임용직위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노사업무 분야	지방행정6급(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관련 업무 ○ 노사·노동 관련 정부 정책 파악 및 반영 ○ 노사·노동 관련 동향관리 및 대응 ○ 각종 노동자 권익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 노사·노동 관련 법령 해석 등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기획력, 추진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노사협의체, 간담회 등 추진력, 노동단체 대응력 등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노사·노동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 및 행정능력 ○ 노동단체에 대한 이해와 노사관련 각종 제도사항 추진능력
-------------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노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노사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 없음